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 지난 5월 28일 공포되었다. 이 법령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지급 보증 △공사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 만기일까지, 어음대체 결재수단인 경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 대금지급 보증 △공사이행 중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 사유 소멸 시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다만, 일정한 경우 보증 제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그동안 어음 수령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대금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신용등급 A 이상, 발주자 대금지급, 한 건의 공사금액이 천만원 이하)가 소멸된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대금지급 보증을 해주는 등 대금지급 보증 범위가 넓어져 보증금을 원활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원사업자가 대금이행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의 계약 불이행을 사유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는 조항이 신설되어 앞으로 대금지급보증 교부율이 높아짐은 물론 하수급인에 대한 보증을 주로 하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의 보증 리스크 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이상일)와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기석)은 그동안 대부분의 하도급업체인 회회 및 조합원사의 권리보호와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같은 협회와 조합의 공동노력에 의해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일부 개정된 것이다. 개정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다.[편집자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709호, 일부개정)

○ 공포일 : 2014. 5. 28, 시행일 : 2014. 11. 2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주요내용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기한과 보증기간 명시(제13조의2제1항)
 - 하도급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어음만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간까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하도록 함

현 행	개 정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① -----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 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p> <p>-----</p> <p>-----</p> <p>-----</p>

-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 소멸 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의무 구체화(제13조의2제2항)
 - 공사이행 중에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함

현 행	개 정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신 설〉</p>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 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 원도급자 하도급대금지급 미보증 시 계약이행보증 청구 제한(제13조의2제8항)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보증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현 행	개 정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신 설〉</p>	<p>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p> <p>⑧ 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